

검 토 보 고 서

(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)

I 검토개요

□ 의안제출

- 안 건 명 :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- 대표발의자 : 최길영
- 공동발의자 : 김영철, 박기홍, 한성환, 김상용, 정우식, 김시욱, 이상걸, 이상우, 노미경
- 발의연월일 : 2023년 11월 14일

□ 제안이유

의안의 의회제출 기한을 본회의 개의 10일전으로 통일하여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의안의 의회제출 기한 변경(안 제6조제2항)
(기존) 의안은 본회의 개의 7일전, 예산안 등 의안은 본회의 개의 10일 전
(변경) 의안은 본회의 개의 10일 전

□ 조례안 : “따로 붙임”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규 【붙임 1】
-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없음

II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현행, 조례안등 일반의안의 제출기한은 본회의 개의 7일전,
예산안등 의안은 본회의 개의 10일 전으로 의안의 의회 제출기한을
달리 정하였으나,

○ 안 제6조제2항은 조례안등 일반의안의 제출기한을 본회의 개의 10일
전으로 변경하여 의안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여
의안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.